

「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
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
결정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4. 6. 20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」 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367호로 2024년 5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인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에
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(안)을 수립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2항에 따라 영등포
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정비계획 결정(안)

1)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	
			기정	변경	변경후
신규	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	-	증) 30,973.2	30,973.2

2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
구분	명칭	면적(m ²)	비율(%)	비고
정비기반 시설 등	합계	30,973.2	100.0	-
	소계	5,409.5	17.5	-
	도로	4,374.2	14.1	-
	공원	1,035.3	3.4	1개소
획 지	소계	25,563.7	82.5	-
	획지	25,563.7	82.5	-

3) 용도지역·용도지구에 관한 계획

-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

구분		면적(m ²)			비율(%)
		기정	변경	변경후	
합계		30,973.2	-	30,973.2	100.0
주거 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18,565.8	감) 18,358.7	207.1	0.7
	제2종일반주거지역	12,407.4	감) 11,579.2	828.2	2.7
	제3종일반주거지역	-	증) 29,937.9	29,937.9	96.6

4)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- 도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
기정	소로	2	-	8~12	보조 간선도 로	69	당산동6가 10-24	당산동6가 110-18
폐지	소로	2	-	8~12	보조 간선도 로	69	당산동6가 10-24	당산동6가 110-18
신설	중로	3	A	12	국지 도로	74	당산동6가 2-1	당산동6가 3-10
신설	소로	1	A	10	국지 도로	37	당산동6가 110-30	당산동6가 110-7
신설	소로	2	A	8 (2~8)	국지 도로	280 (276)	당산동6가 1-1	당산동6가 280-1
신설	소로	3	A	6 (2)	국지 도로	38 (35)	당산동6가 281	당산동6가 289-3
신설	소로	3	B	4	국지 도로	316	당산동6가 10-24	당산동6가 103-2

-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내용	도로명	변경사유
폐지	소로 2	•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기조성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
신설	중로 3-A	•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도로 신설
	소로 1-A	
	소로 2-A	
	소로 3-A	
	소로 3-B	

- 공원 결정(신설) 사유서

구분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m ²)	비고	결정(신설)사유
신설	역사 공원	영등포구 당산동6가 103-7일대	1,035.3	역사공원 내 부군당 이전	비지정향토문화재인 부군당 보전 및 활용을 위해 역사공원 지정

5)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(안)

구 분	시설의 종류	면적(m ²)	법정기준
합계		3,920.0	-
주민 공동 시설	경로당	350.0	330 이상
	어린이집	350.0	330 이상
	작은도서관	160.0	158 이상
	주민운동시설	1,200.0	-
	어린이놀이터	1,200.0	-
	기타공동시설	600.0	-
	소계	3,860.0	2,409.4 이상
부대 복리시설	관리사무소	60	46.1 이상

6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 계획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동)	
	명칭	면적(m ²)	명칭	면적(m ²)		계	철거후 신축
신설	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	30,973.2	획지	25,563.7	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	138	138

7) 건축물에 관한 계획
- 건축시설 계획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구분		주된 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(%)		높이(m) (최고층수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			정비 계획	법적 상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 설	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	30,973.2	획지	25,563.7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50 이하	222.29 이하	300.0 이하	130m 이하 (최고 39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	•주택공급계획 : 771세대 (분양 533세대, 공공 238세대) ※ 초과용적률에 따른 세대 수 : 246세대 (분양 123세대, 공공 123세대) •전체 건립규모(전용면적 기준) <table><tr><th colspan="2">건립규모</th><th>세대수</th><th>비율(%)</th></tr><tr><td colspan="2">합 계</td><td>771</td><td>100.0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85㎡ 이하</td><td>40㎡ 이하</td><td>135</td><td>17.5</td></tr><tr><td>40㎡~60㎡ 이하</td><td>196</td><td>25.4</td></tr><tr><td>60㎡~85㎡ 이하</td><td>372</td><td>48.3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85㎡ 초과</td><td>68</td><td>8.8</td></tr></table> <table><tr><th>건립규모</th><th>기준</th><th>계획</th></tr><tr><td>85㎡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</td><td>80% 이상</td><td>91.2%(703세대)</td></tr><tr><td>임대주택 건설</td><td>주택 전체 세대수의 15% 이상(①) 또는 연면적 10%이상(②)</td><td>①세대수 15.1%(79세대), ②연면적 10.3%(9,270.97㎡)</td></tr><tr><td>전용면적 40㎡ 이하</td><td>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% 이상(①)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% 이상(②)</td><td>①50.6%(40세대), ②7.6%(40세대)</td></tr><tr><td>국민주택규모 주택(85㎡ 이하) 건설</td><td>초과용적률의 50% 이상</td><td>50.06%</td></tr></table>									건립규모		세대수	비율(%)	합 계		771	100.0	85㎡ 이하	40㎡ 이하	135	17.5	40㎡~60㎡ 이하	196	25.4	60㎡~85㎡ 이하	372	48.3	85㎡ 초과		68	8.8	건립규모	기준	계획	85㎡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	80% 이상	91.2%(703세대)	임대주택 건설	주택 전체 세대수의 15% 이상(①) 또는 연면적 10%이상(②)	①세대수 15.1%(79세대), ②연면적 10.3%(9,270.97㎡)	전용면적 40㎡ 이하	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% 이상(①)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% 이상(②)	①50.6%(40세대), ②7.6%(40세대)	국민주택규모 주택(85㎡ 이하) 건설	초과용적률의 50% 이상	50.06%
	건립규모		세대수	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합 계		771	100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85㎡ 이하	40㎡ 이하	135	17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40㎡~60㎡ 이하	196	25.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60㎡~85㎡ 이하	372	48.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85㎡ 초과		68	8.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건립규모	기준	계획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85㎡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	80% 이상	91.2%(703세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임대주택 건설	주택 전체 세대수의 15% 이상(①) 또는 연면적 10%이상(②)	①세대수 15.1%(79세대), ②연면적 10.3%(9,270.97㎡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용면적 40㎡ 이하	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% 이상(①)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% 이상(②)	①50.6%(40세대), ②7.6%(40세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민주택규모 주택(85㎡ 이하) 건설	초과용적률의 50% 이상	50.0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•용도지역 사항 :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, 제2종일반주거지역 → 제3종일반주거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•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%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= 77.60%의 50%인 38.80%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- 용적률 계획

구 분	산 정 내 용					
토지이용 계획	계 (구역면적)	획지면적 (공동주택)	신설 정비기반시설		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	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·공유지
			토지면적	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		
	30,973.2m ²	25,563.7m ²	6,685.0m ²	1,282.0m ²	512.9m ²	4,896.6m ²
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	2,557.5m ²					
기준용적률	190.0%					
허용용적률	200.0%					
상한용적률	222.29% 이하					
법적 상한용적률	299.89%					
최고높이	130.0m(39층)					
건축한계선	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					

8)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
- 임대주택 건설 계획

구 분	세대수	전체비율	임대주택비율
합계	79	15.05%	100.00%
40m ² 이하	40	7.62%	50.63%
40m ² ~ 60m ² 이하	28	5.33%	35.44%
60m ² ~ 85m ² 이하	11	2.10%	13.93%

-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건설에 관한 계획

구 분	검 토 내 용				
국민주택 규모 주택 의무면적 (용적률산정용)	9,918.72m ² 이상				
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(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)	전용면적	공급면적	세대 수	연면적	비고
	39.90m ²	55.46m ²	36	1,996.60m ²	-
	59.90m ²	82.06m ²	63	5,169.97m ²	-
	84.90m ²	115.46m ²	24	2,771.14m ²	-
	합계		123	9,937.71m ²	≥9,918.72m ²

- 기부채납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

전용면적	공급면적	세대수	기부채납 면적(m ²)	
			대지지분	연면적
39.90m ²	55.46m ²	15	895.1m ²	4,471.0m ² (환산부지면적 : 530.2m ²)
59.80m ²	82.06m ²	14		
84.90m ²	115.46m ²	7		

4. 추진경과

날 짜	경과 내용
2021.10.29.	신속통합기획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신청
2021.12.28.	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 선정
2021.10.10.	신속통합기획 신청 (영등포구 → 서울시)
2022.10.19.	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1차
2022.11.23.	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2차
2023.02.22.	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3차
2023.03.17.	신속통합기획(교통) 자문회의
2023.04.18.	신속통합기획(안) 전체 주민설명회
2023.05.15.	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통보 (서울시 → 영등포구)
2023.08.04.	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심의(보완의결)
2023.09.12.	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재심의(원안가결)
2023.10.23.~11.06.	관련부서(기관) 협의
2023.10.25.	주민설명회 개최
2023.10.25.~11.27.	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

5. 검토의견

○ 본 의견청취의 건은

-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인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을 수립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2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

가. 대상지 개요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일대
- 면 적: 30,973.2 m^2
- 용도지역/지구
 - 제2종 일반주거지역
 - 제2종 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

나. 대상지 지정 및 결정(안) 관련 주요 내용

내 용		기 존	증 감	변 경	지정 및 결정 사유
용도 지역 변경	합 계	30,973.2	-	30,973.2	사업성 확보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
	제2종일반 주거지역 (7층이하)	18,565.8	△18,358.7	207.1	
	제2종일반 주거지역	12,407.4	△11,579.2	828.2	
	제3종일반 주거지역		29,937.9	29,937.9	
정비 기반 시설 설치	공원	-	-	역사공원 (신설)	비지정향토문화재인 부군당 보전 및 활용을 위해 역사공원 지정 및 역사공원 내 부군당 이전
	도로	보차혼용도로		- 보차분리 대지내 보도형 공지 조성	보행안전성 확보 등
	사회복지 시설			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	지역생활권에 부족한 노인여가시설 공급

라.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협 의 결 과	조치계획(결과)	비고
서울시 도시관리과	○ 대상지 남측은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,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산로 50길 일부를 '보차혼용 통로'를 지정하였음.	○최초 도로를 제외한 구역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였으며, 2차자문회의 의견에 따라 용도 지역 잔여지를 남지 않도록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일부 편입한 사항임 ○ 도로변 잔여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	부분 반영

구 분	협 의 결 과	조치계획(결과)	비고
	 금회 당산로 50길을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, 보차혼용통로가 지정된 도로 일부를 제척하고 있음.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적인 측면을 볼 때, <u>당산로 50길 전체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지정 및 계획 결정(변경)을 의제처리 하는 방안 검토 필요</u>	<u>주택정비형 취지, 소유권(국공유지)에 따른 유지관리, 대상지 내 높은 국공유지 비율 등을 종합하였을 때 구역 내 포함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미포함하여 진행토록 함</u> ○ 다만 도로의 일체적 정비, 사용주체 등을 고려하여 <u>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착공시 일괄정비가 될 수 있도록 별도 명기하여 조치하겠음</u> ○ 또한 연접한 <u>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계 및 보차혼용통로조정을 반영하여 의제처리하도록 하겠음</u> ○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상 <u>보차혼용통로가 지정된 도로(당산로 50길)를 전부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및 계획 결정(변경) 의제처리하도록 하겠음</u>	
서울시 상임기획과	○ 구역계 관련 다음 사항 조정 검토 필요 - 대상지 서측 구역계가 '<u>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</u>'과 일부 중첩되는 바,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<u>지구단위계획구역 조정 검토 필요</u> - <u>서측 도로(당산로50길)의 확폭계획(6m → 8m)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A) 신설계획을 제시한 바, 해당 도로의 일체적 관리측면에서 구역계 포함 및 당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결정 사항인 '<u>보차혼용통로계획</u>' 삭제 필요</u>	○ 최초 도로를 제외한 구역으로 <u>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였으며, 2차자문회의 의견에 따라 용도지역 잔여지를 남지 않도록 2층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일부 편입한 사항임</u> ○ 또한, <u>도로변 잔여지는 준공업지역</u>으로서 <u>주택정비형 취지, 소유권(국공유지)에 따른 유지관리, 대상지 내 높은 국공유지 비율 등을 종합하였을 때 구역 내 포함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미포함하여 진행토록 함</u> ○ 다만 도로의 일체적 정비, 사용주체 등을 고려하여 <u>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착공시 일괄정비가 될 수 있도록 별도 명기하여 조치하겠으며, 연접한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구역계를 조정하고 보차혼용통로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음</u>	

구 분	협 의 결 과	조치계획(결과)	비고
	○ '공원'은 용도지역 혼재지(제2종7층, 제2종)로 계획된 바, 용도지역계획의 일체적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조정 검토 필요	○ 공원의 경우 그 형태 및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<u>신속통합기획 사전</u> <u>자문을 통해 기 결정된 사항임</u> ○ 이에 용도지역은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하도록 결정하였음	미 반영

○ 검토결과

- 본 정비계획 지정 및 결정안은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확보와 주거공급 확대를 위하여 토지 등소유자가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4조에 따라 입안 제안한 것으로, 주요 내용으로 주거지역 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 이하)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였으며,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역사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함.
- 관련부서 주요 협의결과 총 95건 중 94건을 반영하였으며,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사업 시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, 본 정비사업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며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참 고 자 료

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제14조(정비계획의 입안 제안) ① 토지등소유자(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. 16., 2021. 4. 13.>

1.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
2.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
3.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·도조례로 정하는 경우
4.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
5.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
6. 토지등소유자(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. 다만,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7.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

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,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)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

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, 주민설명회,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, 제98조,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·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·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 ① 국토교통부장관(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(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)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>

③ 제2항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>

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신설 2021. 1. 12.>

1.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

2. 제30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,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·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
-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1. 1. 12.>
- ⑥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, 2021. 1. 12.>
-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주민”은 “지방의회”로 본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1. 1. 12.>
- ⑧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21. 1. 12.>[전문개정 2009. 2. 6.]